

『구미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 근 아 의원

2. 제안이유

- 진실, 질서, 화합을 이념으로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단체를 육성·지원함으로써 민주적이고 문화적인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해, 공동운명체로서의 시민화합을 이뤄 선진 구미시 만들기에 이바지하고
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 시가 권장하는 사업내용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)
-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-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)
- 바르게살기운동의 보조금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, 안 제8조)
-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」 제3조, 제4조
-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「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」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·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구미시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이념을 계승·발전시키고,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,
- 안 제3조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 구미시협의회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고,
- 안 제6조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,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게 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
「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」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의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기초질서

생활화 운동, 국토대청결 운동, 도덕성 회복운동 등을 통한
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발전시켜 더불어 사는 구미시를 만들기
위해 발의된 안건으로

-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
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